

「양도성예금증서(CD) 특약」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제1조 증권발급과 권리행사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며,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합니다.</p> <p>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.</p> <p>제3조 최저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</p> <p>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단위로 합니다.</p> <p>제5조 만기일 전 지급거절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.</p> <p>제6조 만기후 이자 2016. 9. 21.자로 이 약관 개정 후 가입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만기후 이자를 지급합니다. 단, 만기일이 임시공휴일 또는 새로 지정되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일수에 대하여 가입 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</p> <p>1. 1개월 이내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2. 1개월 초과 :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/2</p>	<p>제1조~제6조 (좌 동)</p>	

제7조 등록발행

-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규정에 따라 등록발행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-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.

제8조 면책

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(이자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·도난 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

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7조 등록발행

-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법 및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-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.

제8조 (좌 동)

제9조 관련법규의 준용

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및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- 공사채등록법 폐지
- 은행법(제33조의 5) 및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

- 공사채등록법 폐지
- 은행법(제33조의 5) 및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